

의안번호	2202698
의 퇴 인	김미애 의원
회 답 일	2024. 8. 22.
추계번호	24C2654

장애인·노인·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【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】

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
1	안 제16조(시설이용상의 편의 제공)	장애인 등이 많이 이용하는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의 시설주는 전동보장구충전시설(전동휠체어 등 전기를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보장구를 충전할 수 있는 시설)을 갖추어야 함

II.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

1. 근거 규정

연번	조·항(조제목)	미첨부 근거 규정
1	안 제16조(시설이용상의 편의 제공)	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
2. 상세 사유

-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공공건물 등에 전동보장구충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으나, 현 시점에서는 개정안 시행에 따라 추가로 소요되는 비용을 합리적으로 추정하기 위한 자료가 부재하여 추가재정소요 추계가 곤란
 - 보건복지부는 2019년(단년도) 장애인 전동보장구 충전기 설치 사업을 시행하여 약 2천개소에 전동보장구 충전기를 설치(당시 예산서상 설치 단가는 개소당 220만원)
 - 현재 서울시 송파구, 부산시 해운대구, 대구광역시, 인천광역시, 광주광역시, 세종특별자치시, 경기도 시흥시 등 여러 지역은 지방재정을 재원으로 장애인 전동보장구 충전기 설치 사업을 시행하고 있음

- 안 제16조제2항은 전동보장구충전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의 범위와 용품의 종류 등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어, 현 시점에서는 개정법률 시행에 따라 설치 의무가 부과될 시설의 종류를 알 수 없고, 이에 따라 추가로 설치해야 할 전동보장구충전시설의 수와 평균 설치 단가도 사전에 추정하기 어려움
 - － 전동보장구충전시설은 설치 위치(실내·실외)에 따라 단가가 상이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, 인천광역시가 2024년 전동보조기기 급속충전기 설치사업 추진을 위해 산출한 견적가를 살펴보면, 전동보장구충전시설 설치 단가는 실내 설치 시 275만원, 실외 설치 시 352만원이었으며, 실외 캐노피를 추가 설치하는 경우 개소당 최대 693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남¹⁾
- 따라서 현 시점에서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를 합리적으로 추계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, 개정안은 「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」 제3조 제1항제3호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에 해당

Ⅲ. 부대의견

□ 없음

Ⅳ. 작성자

□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사회비용추계과	김우림	이진우

1) 인천광역시(보도자료), “인천시, 올부터 전동보장구 보험 가입 지원”, 2024.1.8.

□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김우림	02-6788-3738	wrkim@nabo.go.kr